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11

대 구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4누6891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
원고, 피항소인	[redacted] 주식회사
피고, 항소인	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대구지방법원 2014. 11. 14. 선고 2014구합21884 판결
변 론 종 결	2015. 4. 3.
판 결 선 고	2015. 5. 1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4. 5. 9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11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 제3쪽 스물넷째 줄 아래에 "④ 제3항에 의하여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환급한다. 다만 제3자의 압류·가압류·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 판결 제3쪽 스물다섯째 줄의 '주택분양보증약관'을 '주택분양보증약관 (갑 제4호증의 2)'로, 스물일곱째 줄의 '입주금의 나부중지'를 '입주금의 납부중지'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 제5쪽 일곱째 줄의 "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(대구고등법원 2014누5676호)에 계류 중이다."를 "피고가 항소하였으나(대구고등법원 2014누5676호), 2014. 12. 12. 항소기각되었으며, 이에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(대법원 2014두48054호)에 계류 중이다."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 제5쪽 열째 줄, 제9쪽 여섯째 줄, 제10쪽 둘째 줄의 각 "지방세법"을 각 "구 지방세법"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 별지 '관계법령' 중 제17쪽 열아홉째 줄의 "**■ 주택법**"을 "**■ 구 주택법 (2015. 1. 6. 법률 제12989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)**"으로 고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11

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사공영진

판사 장 래 아

판사 정 한 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11

목록

(금액단위: 원)

순번	귀속	세목		
		재산세	도시계획세	지방교육세
1	2009년	54,087,450	35,836,980	10,817,490
2	2010년	54,092,120	35,836,980	10,818,420
3	2011년	91,282,980		10,981,410
4	2012년	91,308,490		10,986,520